

증인진술서

사 건 2000가단00000 건물명도 등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진술인(증인)의 인적사항

이 름:■■■

주민등록번호: 00000-000000

주 소: 00시 00구 00로 00

전화번호: 000-000(휴대폰 000-000-000)

- 1. 진술인(증인)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〇〇. 〇〇.에 제대하였는데 월남에서 모 아온 돈이 있어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〇〇〇와 토지를 매수하기로 의논하 였습니다.
- 2. 그래서 19○○. 봄 소외 ●●●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○○○와 같이 체결하였고 비용은 진술인이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○○○에게 드린 돈을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○○○ 가 쌀로 바꾸어 5가마 반 정도 주고 소외 ●●●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입니다. 진술인이 비용을 댔기 때문에 가족들 중 진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셈입니다.
- 3. 이 사건 토지가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◈◆◈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소외 ◉◉◉가 동네에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서 명의이전을 쉽게 못했었고, 진술인은 그 뒤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19○○.경 소외 ◉◉◉가 동네에 나타났을 때 마침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◈◆◈가 근처에 살고 있어 명의만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◈◆◈ 명의로 된 것입니다.
- 4. 위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,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

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.



2000. 0. 0.

위 진술인(증인) ■■■(서명) (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·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 혛
관련조문	인정하는 때에는 출석·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
	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
	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
	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310조).
	·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. 다만, 재판장이 허가하면
	그러하지 아니하다(민사소송법 제331조).
	·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
	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	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, 증인
	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 ③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
	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(다만, 합의
	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)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
	다.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
	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민사소송규칙 제79조).
기 타	·증인의 증언내용이 주신문과 반대신문간에 있어서 전후가 상반되
	어 일관성이 없고 같은 증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증
	언내용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증언
	은 조리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님을 추단할
	수 있어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
	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
	것은 위법함(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653 판결).
	·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
	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. 따라서 증인신문조서
	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, 증언한 바

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

수는 없음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86 판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